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에스케이증권주식회사 (이하 “회사” 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중개업무를 행함에 있어 대차거래시스템상에서 대여 신청을 한 원대여자(이하 “대여자” 라 한다)와 증권을 차입하고자 하는 다른 당사자(이하 “차입자” 라 한다)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차거래”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 이라 한다)의 중개를 통하여 대여자와 차입자간에 필요한 증권을 대여하는 거래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경쟁거래 : 대차수수료율의 호가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대차거래
 - 나. 지정거래 : 거래상대방이 특정되고 예탁원을 담보권자로 하는 대차거래
 - 다. 기한부거래 : 거래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해당 거래종료일의 도래에 의하여 거래가 자동적으로 종료하는 대차거래
2. “대여자”란 회사를 통해 예탁원에 증권을 대여하는 자를 말하며, “차입자”란 당해 증권을 차입하는 자를 말한다. 단, 회사는 동 대차중개를 함과 동시에 최종차입자가 되지 아니한다.
3. “중도상환”이란 사전에 약정된 대차거래 기간 종료 이전에 차입자의 요청에 의해 대차거래를 조기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4. “중도상환요청(이하 “Recall” 이라 한다)”이란 사전에 약정된 대차거래 기간 종료 이전에 대여자의 요청에 의해 대차거래를 조기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차거래의 대상증권)

- ① 대차거래의 대상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원활한 대차거래를 위하여 대상종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대차거래 대상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종가로 한다.

제4조(대차거래기간)

차입증권의 대차거래기간은 대차거래 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5조(대차거래의 정지)

-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차거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대여자에게 통지한다.
- ② 전 항에 따라 대차거래 업무를 정지한 후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개한 후 이 사실을 대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자)

회사의 대차거래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대차중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자로 하되 신용불량 및 기타부실 거래자, 신용공여 약정계좌, 사고등록계좌, 질권설정계좌, 가압류계좌, 사절원계좌, 실명미확인계좌, 선물연계지정계좌, 랩계좌, 미수미납계좌는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대차거래신청)

대여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동안 영업점 내점이나 유선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증권의 대차거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정한 위탁계좌의 개설 또는 보유
2. 본 약관에 대한 동의
3. 증권 대차거래에 대한 개별약정서 및 신청서의 작성 (단, 지정거래에 한함)

제8조(대차거래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대여자의 대차거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여자의 파산 등의 사유 및 회사의 대차거래 대상 위탁 계좌에 대한 가처분, 질권 설정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차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2. 대여자가 관련법규 및 이 약관 등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시스템을 이용하는 다른 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회사가 전항에 따라 대여자의 증권 대차중개 신청을 제한하게 된 경우 해당 대여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담보의 징구)

회사가 대여자로부터 회사의 계산으로 차입한 증권을 예탁원의 중개에 의하여 차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회사와 차입자간의 대차거래에 필요한 사항들은 중개기관인 예탁원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0조(담보증권 및 평가방법)

대차거래의 담보대상 및 평가방법은 중개기관인 예탁원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대차거래 체결내역 통지)

대차거래가 체결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체결 내역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대여자에게 통지한다.

1. 회사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SMS 통지 (단, SMS서비스 신청고객에 한함)
2. 영업점 전산, 홈페이지 및 HTS (Home Trading System) 등에서 대여종목, 수량, 대여수수료율 등의 대차거래 체결내역을 수시로 열람
3. 월간 대여내역이 있는 경우 월간 거래내역으로 통보

제12조(대차증권의 권리 처리)

- ① 대차기간 동안 대차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권리는 예탁원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차입자에게서 대여자로 이전된다.
1. 현금배당 및 이자 : 차입자는 대금지급일에 대여자에게 지급
 2. 유상청약 : 대여자는 유상청약기간 종료일 하루전까지 예탁원을 통하여 청약자금을 차입자에게 지급하며, 차입자는 해당대금으로 매입한 유상신주를 상장일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대여자에게 지급
 3.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 : 차입자는 상장일로부터 기산하여 상장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여자에게 지급
 4. 신주인수권 : 대여자와 차입자가 예탁원을 통해 유상청약에 대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인도하기로 동의한 경우 차입자는 유상청약일 전일까지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를 대여자에게 전달
- ② 대차거래기간 중에 발생하는 의결권은 대여자가 행사할 수 없으며, 대여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준일 이전에 Recall을 하여야 한다.
- ③ 대차거래기간 중 대여자가 대여주식의 매도를 하기 위해선 회사가 정한 기준일 이전에 Recall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대여수수료의 지급 등)

- ① 회사는 거래개시일로부터 거래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여수수료를 예탁원을 통해 차입자로부터 수령하여 대여자에게 지급한다.
- ② 이 경우 대여수수료는 매월 첫 영업일 및 만기·중도상환·Recall 시에는 상환일에 대여자의 위탁계좌로 지급한다.
- ③ 대여수수료는 대차거래기간 중 다음 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일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식 : 일별 대여주식평가금액 × 대여수수료율 ÷ 365 (원미만 절사)
 2. 대여주식평가금액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전일종가 × 대여주식수
 3. 대여수수료율 : 대여자와 차입자가 약정한 수수료율(이하 “원 대여수수료율”이라 한다) 중 예탁원 및 회사의 중개수수료를 차감 후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
- ④ 회사는 대여수수료율과 관련하여 부과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14조(대차증권 등의 반환)

- ① 기한부거래에서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거래종료일 이전에 대차거래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예정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전(또는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에서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하는 날)에 상대방에게 거래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 동意的 필요 유무 및 조기종료수수료의 징수여부는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별첨1>의 양식에 의한다.

제15조(상환연기)

- ① 대여자와 차입자는 상호 합의하는 경우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 ② 이 경우 대여자와 차입자는 상환만기일 3영업일 전까지 만기연장의사를 영업점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대차거래의 종료)

대차거래의 종료 사유 및 종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차거래기간이 만료된 경우 : 해당 대차거래 기간의 만료일
2. 대여자가 Recall한 경우 : 요청일 포함 4영업일째 되는 날
3. 차입자가 중도상환한 경우 : 요청일 포함 3영업일째 되는 날

제17조(회사의 대이행책임 등)

차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차입자의 파산 등의 사유 포함)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경우 예탁원이 차입자를 대신하여 회사에게 이행할 책임을 지고,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대여증권과 동종·동량의 증권을 시장을 통하여 매입하여 대여수수료 및 제12조 제①항의 수익 등과 함께 회사에게 인도하거나 지급하고 회사는 이를 대여자에게 다시 인도하거나 지급한다.

1. 예탁원의 관련 규정에 의한 추가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차거래 종료일까지 대차증권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대차증권의 유동성부족 등에 따라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른 현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수익 등의 인도 또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대여수수료 지급일까지 대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8조(상속 처리)

주식 대여 중 상속업무가 진행될 경우, 회사는 대여 주식의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요청일로부터(요청일 포함) 4영업일 이내에 제반 업무절차에 따라 피상속인 계좌로 대여주식을 상환한다.

제19조(장기보유 비과세의 배제)

대여자의 주식 대여 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바에 따라 특정 종목 장기보유로 인한 배당세금 비과세 혜택은 배제될 수 있다.

제20조(대여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여자의 주식 대여로 발생하는 대여 수수료 및 배당금에 대하여 회사는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 징수한다.

제21조(비밀준수의무)

회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약관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22조(약관 등의 변경)

- ① 회사는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약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HTS (Home Trading System)을 통하여 변경예정일 전부터 1개월간 게시하고, 대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서면 등 대여자와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②항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통지 또는 게시 후 대여자가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서면 통지또는 게시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③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4조(기타)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법규 및 규정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대차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5조(분쟁조정)

대여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부서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증권대차거래 [개별약정서 / 거래확인서] 양식

수 신 :

발 신 :

일 자 :

[]년 []월 []일 체결한 증권대차거래계약에 따른 개별 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조건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 대여자 :

2. 차입자 :

3. 거래개시일 :

4. 거래의 종류 : [기한부거래]

5. 거래종료일 :

6. 대차증권

종목명 :

수 량 :

7. 중도상환이나 Recall시에는 상대방에게 3영업일 전 요청 후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필요로 하지 않는다]

8. 기타 특약 사항

9. 상기 거래조건에서 합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